

이 자료는 2003. 11. 20일 및 28일 서울지방법원의 세녹스판결이후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임.
- 편집자 주 -

산자부, “세녹스 제조·판매 강력단속”

산업자원부

-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에는 검찰에 항소요청 방침
- 근본적으로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근절할 방침

- 서울지방법원 (형사부 단독 박동영 부장판사)는 2003.11.20(목) “세녹스 관련 피고인들에게 무죄”를 선고했다.
 -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 이유로 ‘석유사업법 제26조(유사석유제품제조판매금지)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, 세녹스는 첨가제로 보기로 어렵고 유사석유제품으로 볼수도 없다’는 점을 들었다.
 - 한편, 박동영판사는 선고재판정에서 ‘무죄라고 해서 세녹스가 우수한 제품이라는 것은 아니며, 세녹스에 대한 제조·판매 금지를 위한 산업자원부의 명령은 유효하고, 이것은 (단지) 1심 판결의 결과일 뿐이다’라고 말했다.
- 산업자원부는 이에 대해 “무죄선고는 이해할 수 없으며, 검찰에 즉시 항소를 요청할 것”이라고 밝히고, “석유사업법 제26조가 위헌소지가 있다면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먼저 구한 후 법26조 위반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 - 또한 선고재판정에서 재판장이 구두로 ‘세녹스

의 제조·판매 금지는 유효하고, 1심판결의 결과 일 뿐이다’고 말한 것은 판결문의 내용과 서로 모순된 것이며, 재판부 스스로 판결내용을 축소 해석 하는 것이라고 산업자원부는 밝혔다.

- 특히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“세녹스는 세금을 포탈하거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저해할 염려도 없는 정상적인 석유제품”이라고 한 것은 어떤 추론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라고 지적하고, 석유제품의 정의는 석유사업법에 명확하게 나와있어 “어떤 경우로 해석해도 세녹스를 석유제품으로 볼 수는 없다”고 밝힘.

※ 석유사업법 제2조(정의) 및 시행령 제3조(탄화수소유) : 법제2조는 “석유제품은 휘발유, 등유, 경유, 중유,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”이라고 하고, 시행령 제3조는 탄화수소유로 항공유, 용제, 아스팔트, 나프타, 윤활기유 및 석유중간제품(유분을 말한다), 프로판, 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라고 정하고 있음.

※ 또한 세녹스측은 스스로 석유제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거부하고 있음.

- 한편, 산업자원부는 서울지법의 “세녹스에 대한 무

- 죄선고”에도 불구하고,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, 엘피파워 등을 포함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하여 검찰·경찰 및 시도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.
- 이와관련 정부는 조만간 관계부처회의를 소집하여 제조·판매행위의 단속과 세금징수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.
 - 이와함께 현재 개정 추진중인 “석유및석유대체 연료사업법”을 조속히 추진, 유사석유제품의 제조·판매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. 현재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금년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
- ※ 주요내용 : ① 유사석유제품 단속 실효성 강화
 ② 종합적인 석유대체연료 관리규정 신설
 ③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

■ 산업자원부는 서울지방법원의 2003.11.20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세녹스 제조·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.

- ① 이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죄선고의 의미는 석유사업법 26조의 위헌 가능성을 들어 “세녹스 제조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적정하지 않다”는 뜻이며,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“세녹스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는 계속 유효”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음.
- ② 최근 다른 법원이 세녹스와 동일한 알콜연료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하고,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한 바 있어 알콜연료에 대한 판결의 내용이 법원간에 서로 상반되고 있는바, 어느 하나의 판결을 존중하기 어렵기 때문임.

※ 2003.10.10 서울지방법원(재판장 황한식)이 같은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기소된 (주)아이엔지에너지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단하고 징역 1년(집행유예 2년)을 선고했고, 2003.8.1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같은 석유사업법 제26조 위반으로 기소된 엘피파워(LP-power)에 대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바 있음. 아이엔지나 엘피파워는 세녹스와 그 성상이 거의 같은 제품으로 산

업자원부는 이들을 모두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하고 고발하였음.

※ 산자부가 2003.3.19 발한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대한 세녹스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과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“세녹스는 석유사업법 제26조에 근거한 유사석유제품”이라고 판정하고 가처분 신청을 “이유없다”고 기각결정한 바 있음. 특히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“세녹스는 그 원료, 제조방법 및 실질적인 용도 등에 비추어 석유사업법 제26조 및 그 시행령 제30조 본문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바”라고 판시하고 있음.

③ 한편, 지난 2003.8.5.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녹스, LP-power, ING 등 알콜연료가 더 이상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첨가제로 인정될 여지가 없어졌으며,

④ 설사 세녹스 측 등이 세녹스나 다른 유사석유제품을 첨가제라고 계속 주장하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상 새로이 개정된 “첨가비율 1%이내 및 판매용기 0.55리터 이내”라는 첨가제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불법제품이 되기 때문임.

⑤ 또한, 산자부가 2003.3.19 발동한 용제수급조정명령에 대한 세녹스측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서도 2003.5.16 서울행정법원이 “이유없다”고 기각했고, 2003.9.15 서울고등법원에서도 “이유없다”고 기각된바 있기 때문에 용제수급조정명령으로 세녹스의 원료를 유효하게 차단할수 있고,

⑥ 더구나 서울지법이 이번(2003.11.20) 판결에서 “세녹스 측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가능성이 없다”고 판시하여, 국세청이 효과적으로 체납 세액의 강제징수절차를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임.

⑦ 무엇보다도 세녹스와 같은 유사석유제품의 제조·판매를 방지할 경우, 연간 54조원에 달하는 국내 석유제품 제조 및 유통시장의 질서가 근원적으로 붕괴되고,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심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.